

6.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30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시민안전실장)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 상정일자 :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4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조례상 신설 위원회의 경우 신설을 최대한 억제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구우수식품 인증표시에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 추가,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필수 심의사항 삭제, 임의 위원회로 규정,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그 밖에 조문 정비임.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 이 개정조례안은

-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22. 7월)에 따라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기능) 우수식품 인증·취소, 인증기준, 우수식품 운영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마케팅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안 제2조의3에서는 대구우수식품의 인증표시를 위하여 상표법에 따른 상표 이외에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 등도

추가하였음.

- 이는 '22년 7월에 개발된 대구우수식품의 인증표시를 변리사의 검토의견에 따라 디자인 출원 등록(대구우수식품 인증 BI 지식 재산권(디자인권) 출원등록) 중인 것을 반영한 것임.

[대구우수식품 인증 BI]



-가지가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대구대표 Good Food” -

(가지가지 다채로운, 우수한 최고의, 열린 마인드·열정·에너지)

- ▶ 원과 라인을 응용하여 “good(우수함)” 을 상징화
- ▶ 대구의 다양한 식품(여러 개의 원), 열린 마인드 (오픈 된 박스), 열정&에너지(레드컬러), 신뢰를 바탕으로 다채롭고 희망가득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대구우수식품 이미지 표현

- ▶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7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 위원회의 필수 심의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심의 등을 통해서도 우수식품 인증 또는 인증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 안 제9조에서는 우수식품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향후 사업추진 상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었음.
- ▶ 안 제10조제4항, 안 제12조제2항은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일부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 ▶ 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있어 심의·자문 으roman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음.

- ▶ 안 제11조제7항(수당 지급 관련),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운영세칙)는 명시된 규정을 삭제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음.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현행)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7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하생략</p>
<p>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좌동 2. 좌동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좌동</p>
<p>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 그 밖에 안 제1조, 안 제5조 ~ 안 제7조, 안 제16조에서는 올바른 행정 용어를 사용하는 등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등을 정비하였음.

○ 이 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개정조례안 제출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을 자제하고자 진행 중이던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의 설치7)를 중단하고, 향후 필요 시 설치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업무의 책임행정 강화와 신속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위원회 기능을 자체 계획으로 대체하여 사업추진 시, 대구시 인증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7)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위촉직 위원 공모 기간 : 2022. 6. 20. ~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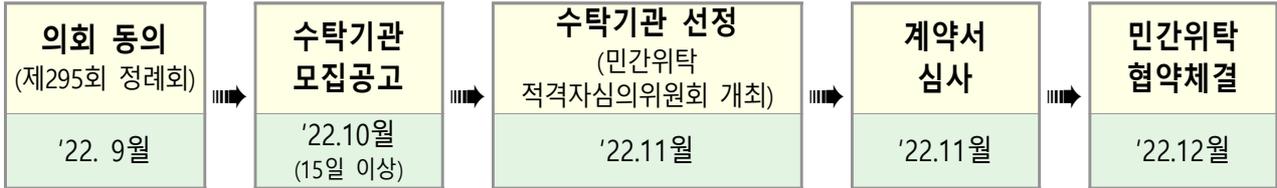
- 공고인원 5명(당연직 2, 기관추천 2 제외)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7.6.)에 의거 "위촉직 위원 선정심사 단계 전 설치 중단"

참 고

위탁 추진 계획(안)

1 위탁 추진절차



2 수탁기관 모집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신청기관의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써, 신종감염병 등 환자관리, 감염병 관리체계, 감염병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대한 기술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기관

3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6~9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 보건의료분야 대학교수,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 위원선정 : 공개모집 및 추천
- 위원임기 :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한 날까지 함(*안전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
-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PT) 평가 후 적격자 선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수식품 인증받은 업체는 몇 군데 정도 있는지? ○ 우수식품 인증 후 주어지는 혜택은? ○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정비를 하라고는 하지만, 불과 1년도 안되어 심의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 당초 검토단계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성하려고 한 것일텐데, 위원회를 대체해서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 개정조례안 9조를 보면 우수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에서 ‘둘 수 있다’ 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음. 위원회 관련 규정을 폐지한다면 심의위원회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직 인증받은 업체는 없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음. 23개 업체가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15개소, 품평회를 통해 8개소를 골라놓은 상태로 첫해에 최종 5개소 정도를 인증할 예정임. ○ 우수식품 인증 로고를 부착해주고, 대구시가 나서서 홍보, 타시도 마케팅을 통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어갈 예정임. ○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위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현재 공모절차는 진행하였지만 위원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임. 올해 7월에 내려온 행정안전부 지침과 대구시 방침에 따라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위원회는 폐지하지만, 실무적으로 심의기구나 심의협의체 등을 통해 최대한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음. ○ 실무자들과 검토해 본 결과 심의위원회를 지금 폐지하기는 하지만, 추후에 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요도가 있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